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2호 2015. 6. 26. (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38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2
- 하동군 고시 제2015-4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2차) 3
- 하동군 고시 제2015-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542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공고 11
- 하동군 공고 제2015-552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17
- 하동군 공고 제2015-561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15-569호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열람 공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15-573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23
- 하동군 공고 제2015-578호 하동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 하동군 공고 제2015-579호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15-58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42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5 - 38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높이 (m)		
시목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25 일원	156,000	10,500	6.5	차수그라우팅 공사완료 (‘14. 11. 8.)	‘13. 11. 14.
일기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95-5 일원	101,000	6,600	4.3	개보수 공사 완료 (‘14. 12. 5.)	‘13. 11. 14.
이명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47-2 일원	72,000	126,000	8.5	차수그라우팅 공사완료 (‘13. 11. 17.)	‘13. 11. 14.

2015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5-4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2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60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3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787-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60	20150610	20070618	주교천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로서 시설명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08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59-1	20150610	20070618	박석거리, 전나무동,서재땀,원 목계 등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2-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85-10	20150610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 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7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18	20150610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 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478-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340	20150610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 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544-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촌길 53	20150610	20070618	거문고형의 뒷산을 끼고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60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20-29	20150610	20070618	남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역 특성을 합성하여 남양안길로 명 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83-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61-5	20150610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 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 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66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478-5	20150610	20070618	칼남재, 양지땀,원골마을을 합 한 행정상의 명칭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67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87-9	20150610	2007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칠 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675-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87-13	20150610	2007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칠 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 6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136-7	20150610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0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78-25	20150610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 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76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범바위길 53-9	20150610	20070618	범의 형국을 갖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 230-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길 67-41	20150610	20080402	원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고유 지명을 합성하여 원양샘골길로 명명	

하 동 군 공 보

(5) 제 432 호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4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만지길 30-1	20150610	20080402	만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5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39-35	20150610	2008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 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 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4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37-94	20150610	20080402	뒷산이 눈썹같이 생겼다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78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2길 18	20150610	20090302	자연마을 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 112-2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46	20150610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 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416-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15-6	20150610	2009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 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 123-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124-5	20150610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 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06-3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58-1	20150610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 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06-3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58-2	20150610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 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06-3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58-3	20150610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 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4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8-5	20150610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93-2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안길 8-11	20150610	20130520	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6) 제 432 호

하동군 고시 제2015 - 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하동군 고시 제2015-34호와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 일원 『하동군 읍내리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며, 하동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하동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 6.

하 동 군 수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명칭 :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역 : 사업주체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상 호	주식회사 호텔도교	주식회사 효개	
주 소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 722호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10, 3층	
대표자	최종상	이다건	
주 소	김해시 삼문로 57번길 7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서3길 92, 1201호 (월영동 한라 해말금아파트)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 일원
(면적 23,443㎡ 중 20,688㎡)

하 동 군 공 보

(7) 제 432 호

라.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공동주택

구 분	규 모	세대수 (형별)	주 거 면 적(m ²)			비 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민 간)	9~20층 498세대	80 (84A형)	112.9967	84.9906	28.0061	
		12 (84B형)	112.2726	84.7360	27.5366	
		158 (71A형)	95.6224	71.7068	23.9156	
		82 (59A형)	80.3454	59.9964	20.3490	
		101 (59B형)	81.5474	59.9650	21.5824	
		65 (59C형)	80.2644	59.9660	20.2984	

□ 부대시설현황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 경로당, 어린이집(1동)	○ 지하1층, 1동	287.4979m ²	
○ 지하주차장,(2동)	○ 지하1층, 2동	11,538.1652m ²	
○ 기계, 전기실(1동)	○ 지하1층, 1동	316.4000m ²	
○ 펜룸(1동)	○ 지하1,2층, 2동	186.7434m ²	
○ 관리사무소(1동)	○ 지하1층, 1동	78.4943m ²	
○ 경비실(1동)	○ 지상1층, 1동	14.4400m ²	
○ 근린생활시설(1동)	○ 지상2층, 1동	332.9500m ²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5. ~ 2017.

바.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국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별첨1)

사. 관계 도서의 열람

-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하동군 도시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32 호

▣ 별첨1

1.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동군 하동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4번지 일원	15,050	감)15,050	-	
신설	1	하동군 하동읍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 일원	-	증)23,443	23,44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15,050m²)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23,44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2008년)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759	중로 1-1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759	중로 1-1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 도로			개설현황반영 (구역외)
신설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4	중로 3-2호선	읍내리 558번지	일반 도로			진입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540	중로 1-1호선	중로 3-2호선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542	중로 1-1호선	중로 3-2호선	일반 도로			선형변경 (구역외)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0	중로 3-2호선	소로 1-5호선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4	중로 3-2호선	소로 1-5호선	일반 도로			기·종점 변경 (구역외)
폐지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30	중로 3-2호선	소로 1-5호선	일반 도로			

하 동 군 공 보

(9) 제 432 호

•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 3-2호선	중로 3-2호선	○ 선형변경	○ 실제 도로 개설현황과 도시계획선이 상이하여 개설현황과 일치되도록 선형 변경
-	중로 3-4호선	○ 노선신설 - B = 12m, L = 14m	○ 대상지 내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
소로 1-5호선	소로 1-5호선	○ 선형변경 - L = 540m → 542m (증 2m)	○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선형변경
소로 3-7호선	소로 3-7호선	○ 기.중점 변경 - L = 104m → 130m (증 26m)	○ 중로3-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기.중점 변경
소로 2-20호선	-	○ 노선폐지	○ 토지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 도로와 기능이 중복되는 본 노선을 폐지

나) 군 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하동읍 읍내리 44-5번지일원	-	189	189		
신설	2	녹지	경관 녹지	하동읍 읍내리 47-1번지일원	-	393	393		
신설	3	녹지	경관 녹지	하동읍 읍내리 59번지일원	-	90	90		

• 군 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녹지	○ 경관녹지 신설 A = 189㎡	○ 대상지 및 지역주민의 자연친화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내 하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조성
2	녹지	○ 경관녹지 신설 A = 393㎡	○ 대상지 및 지역주민의 자연친화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내 하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조성
3	녹지	○ 경관녹지 신설 A = 90㎡	○ 대상지 및 지역주민의 자연친화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내 하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조성

다) 군 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284	하천	소하천	읍내리 1547-2	읍내리 1547-2	-	0.20	5~10	1,609	하고 제2008-685호 ('08.09.11)	
변경	284	하천	소하천	읍내리 1547-2	읍내리 1547-2	-	0.23	5~20	2,405		

하 동 군 공 보

(10) 제 432 호

• 군 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84	하천	○ 선형 변경 - L=0.20km→0.23km (증 0.03km) - B=5~10m→5~20m - A=1,609㎡→2,405㎡ (증 796㎡)	○ 대상지 및 지역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자연친화형 주거 환경을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내 하천의 선형 변경

라) 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	하수도	읍내리 44-5	읍내리 1547-2	-	0.079	2	182		

• 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하수도	○ 하수도 신설 - L=0.079km, B=2m, A=182㎡	○ 대상지 내를 통과하는 구거의 대체구거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신설

3)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I	23,443	I-1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 일원	20,688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1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50%이하	
		최고높이	○ 65m(20층) 이하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하동군 공고 제2015-542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가. 입찰건명 : 재첩특화마을 공유재산(제조업소-재첩가공공장) 사용허가
-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1880(신기리 402번지)
 - 건축면적 : 22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용도 : 재첩가공공장
- 다.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라. 사용료 예정가격 : **금7,043,140원(부가가치세 별도)**
 - ※ 예정 가격은 1년차 사용료이며 최초년도 사용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마. 영업범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식품제조·가공업

2.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재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정

- 가.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나.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2015.06.09. 10:00 ~ 2015.06.15. 16:00 (7일간)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06.16. 10:00 하동군 경제수산물 입찰집행관 PC
- 라. 계약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4. 입찰 참가자격

- 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다.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자로 하동군 하동읍내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마. 동일 세대 및 가족관계 내에서는 1명만 입찰 참가 가능
- 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전대시 허가취소)
- 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

하 동 군 공 보

(12) 제 432 호

5.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 공고를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서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바.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식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차 순위자순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8.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 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우리군에 귀속 조치합니다.

9. 계 약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구비서류

- 1)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 3)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별지1) 1부
- 5)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다. 계약체결기관 : 하동군청 경제수산과 (어업생산담당)

10. 사용료 납부방법 및 방법

가.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1년간 사용료를 우리군에서 발부받은 사용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낙찰금액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사용료로 대체 합니다.

라.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약 조치되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 납부된 사용료는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온비드"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 입찰 참가지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 재산의 여건, 허가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조건 및 기타사항 : 하동군 경제수산과 어업생산담당(☎055-880-24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1588-5321)

붙임 : 공유재산 허가조건 (일반, 특수)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하 동 군 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내 제조업소(재첩가공공장)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사용허가 일로부터 총 5년 이내에서 1년씩 연장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 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허가취소가 불가피 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 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 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연구시설물 등의 설치 및 원상회복) 사용인은 이 상기 사용·수익 재산상에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만일 무단점유 설치할 경우 고정시설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 다.

제19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허가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특수조건을 두며, 특수조건도 허가조건으로 간주한다.

2015년 6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재첩특화마을 단지 내 제조업소(재첩가공공장) 사용인이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식품관리, 원산지표시 등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사용인은 사용허가 승인 후 즉시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용인(낙찰자)과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의 명의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제비용 부담) ①사용 허가한 장소에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를 할 때에는 본 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어떠한 사유로도 동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②제세공과금은 고지서에 의거 사용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운영)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 화재, 가스, 전기 및 식중독 등 제반 사고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후 부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본 군이나 제3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운영수익에 대한 보장) 사용인 스스로 운영수익 관련 시장조사, 수용조사를 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운영수익 결과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시설·비품인수) 사용인은 하동재첩특화마을 영어조합법인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법인과 협의 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실적 보고서 등 제출) 사용인은 본 군의 요구 시 운영실적 및 상품의 구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5. 6.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5 - 552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11일

하 동 군 수

1. 약정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2. 하동군 금고지정 내용

금고명	금융기관명	취 급 회 계
제1금고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금고	경남은행 하동지점	기금

하동군 공고 제2015-561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공중보건과는 병역대체복무자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임.
- 공중보건과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적용범위를 공중보건과를 포함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 행동강령 규칙 적용범위에 '공중보건과' 명시(규칙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055-880-2035, FAX 055-880-2019, E-mail : lhh88@korea.kr)에 [별지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432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하동군에 파견된 <u>공무원에게</u> 적용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하동군에 파견된 공무원, <u>공중보건 의사</u>에게 적용한다.</p>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공고 제2015 - 569호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열람 공고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승인 확정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5년 06월 18일

하 동 군 수

1. 열람 공고 목적

승인 확정된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행하여 계획내용에 대한 이해와 풍수해저감계획이 수립된 관할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하천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소하천정비사업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립(변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구단위홍수방어계획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사업,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법, 하수도법, 사방사업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사업, 풍수해 발생에 따른 개선복구 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검토 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열람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15. 06. 18 ~ 2015. 07. 18 (30일간)
- 나.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주요 내용

- 가. 계획범위 : 675.23km²(하동군 행정구역 전역)
- 나. 주요내용
 -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
 -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다. 과업대상 : 하천·내수·토사·사면·해안·바람·기타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880-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5 - 573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하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관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자 총 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총수의 1/50 이상)	비고
하동군	42,663명	853명 이상	

2015년 6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5-57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수거체계를 단순화하여 주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배출자중심 배출체계 개선
- 기존 가연성, 불연성 위주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재활용품 위주의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구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환경부) 반영

3. 주요 내용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일 명확화 (안 제3조)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로
 - 배출요일 : 재활용품-일·수요일, 생활폐기물-월·화·목·금요일
 - 재활용품 배출방법 구체화
- 수수료 감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반영 (안 제11조)
 - 한 가구당 120리터 이내, 1인 가구 60리터 이내 지급
- 군수의 읍면장 권한위임 사항 구체화 (안 제17조)
 - 투기 단속, 적정배출 홍보, 봉투 공급, 수수료 부과징수 등
 -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제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055-880-2583, FAX 055-880-2569, E-mail : pride123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저녁 20:00~다음 날 05:00”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탄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일이 아닌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2. 그 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다.
 - 3. 단독주택 지역은 품목별 재활용품을 함께 모아서 배출할 수 있다.
-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 1. 재활용품 : 매주 일요일·수요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 2. 재활용품을 제외한 그 외 생활폐기물 : 매주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과 설·추석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하루 전일은 재활용품과 그 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감면은 한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의 규격봉투를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동 군 공 보

(26) 제 432 호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적발
2.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3. 조례 제6조에 따른 적정배출 홍보, 재활용품·생활폐기물 수거
4.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봉투 판매소 지정, 봉투 공급
5.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6. 조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규격봉투에 넣고 묶어서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u>저녁 20:00~다음 날 05:00까지</u>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살></p> <p>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연탄재는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u>적수일 저녁 20:00~다음 날 05:00까지</u> 배출한다.</p> <p>2. (생 략)</p> <p>③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연성(可燃性)폐기물은 <u>홀수일</u>, 불연성(不燃性)폐기물은 <u>적수일</u>에 배출하여, 재활용품은 <u>매주 화, 금, 일요일</u>에 수거한다.</p> <p><신 살></p>	<p>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_____ _____ <u>일요일</u> <u>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u>_____.</p> <p>다만,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p> <p>② _____.</p> <p>1. 연탄재는 <u>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일이 아닌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u> 배출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u></p> <p>2. <u>그 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다.</u></p> <p>3. <u>단독주택 지역은 품목별 재활용품을 함께 모아서 배출할 수 있다.</u></p> <p>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p> <p>1. <u>재활용품 : 매주 일요일·수요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u></p> <p>2. <u>재활용품을 제외한 그 외 생활폐기물 : 매주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u></p> <p>3. <u>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과 설·추석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하루 전일은 재활용품과 그 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u></p>

하 동 군 공 보

(28) 제 432 호

<p>제11조(수수료의 감면방법 등) ①·② (생 략)</p> <p><u>③ 수수료의 감면은 한가구당 매월 300리터 이내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u></p> <p>제17조(권한위임) 다음 각 호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1. <u>조례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권 (일반용, 공공용)</u></p> <p>2. <u>조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수수료의 감면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수수료의 감면은 한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의 규격봉투를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한다.</u></p> <p>제17조(권한위임) ① _____.</p> <p>1. <u>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적발</u></p> <p>2. <u>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청결유지명령</u></p> <p>3. <u>조례 제6조에 따른 적정배출 홍보, 재활용품·생활폐기물 수거</u></p> <p>4. <u>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봉투 판매소 지정, 봉투 공급</u></p> <p>5. <u>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u></p> <p>6. <u>조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제외한다.</u></p>
--	---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5-579호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안 제1조)

-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 조성(안 제4조)
-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출원등록 지원(안 제6조)
-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안제7조)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안 제8조)
-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력양성 지원(안 제9조)
-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화합지원(안 제10조)

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 기업의 근로자 사업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규정(안 제11조)
- 군내 전입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규정(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055-880-2204, FAX 055-880-2199, E-mail jbson@korea.kr)로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2. 제정조례(안)
3. 관련법령 등 참고 사항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기업인·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 활동 지원

제4조(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남·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창업지원) 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이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용지를 기업에게 임대하거나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32 호

제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 및 수출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기술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9조(인력양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사화합 지원)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제11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들로 결성된 조합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주택 건립부지의 알선

2. 사원주택으로의 진입도로 개설 및 주변 가로등 설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원주택 건립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건폐율이 최소 40퍼센트 이상인 사원주택의 경우

나.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이 각각 116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부지매입비 산정방법은 건축연면적(㎡) ÷ 용적률 × 토지감정평가 금액(원/㎡)으로 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원주택 건립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조금 신청금액은 군수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토지평가금액(지장물 제외)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부담으로 한다.
- ⑥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시 20퍼센트, 건축물 중간검사(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후 30퍼센트,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 시 50퍼센트 지급 한다

제12조(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군내에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 ③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추천 받은 내국인으로 전입정착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가. 2명 이상 3명 이하 : 연간 100만원씩 3년간 300만원 지원
 - 나. 4명 이상 : 첫째 100만원, 그 다음해부터 각각 200만원씩 3년간 500만원 지원
 - 2. 지원 시기는 전입정착금 신청이 있는 월의 30일로 한다. 단, 근무일이 아닐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
- ⑤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 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
 - 2.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전출 후 재 전입할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3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하 동 군 공 보

(36) 제 432 호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전입정착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지원조건을 어기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432 호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 추천서						
기 업 명		대 표 자	(남/여)	업 종		
소 재 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소 속 근 로 자 거주현황	근로자수		관내거주		관외거주	
	명		명		명	
추천대상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소 속		직책	입 사 연월일		

위 사람을 「하동군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하동군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하 동 군 공 보

(39) 제 432 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하동군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전입일자
참고사항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 타
	소 유 권	매매	전세	월세	기 타	
자동차 소 유	차 명	연식	배기량	기 타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하동군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2.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하 동 군 공 보

(40) 제 432 호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기업활동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하동군 기업활동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기업활동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기업활동시책(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하동군 기업활동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기업활동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 **관련법규**

1.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5 - 58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5일

하 동 군 수

1. 업 체 명 : (주)조은환경
2. 대 표 자 : 조 현 철
3. 영업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 번호 : 하동수질-3
6. 등록일자 : 2015. 6. 23